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시행 2016.3.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8호, 2016.3.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지시를 받는 도축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분폐기”란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체검사)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

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시 해당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 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체검사)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도축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 검사 등) ①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 보류 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6조(불합격품 처리) 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축검사결과 보고) 검사관은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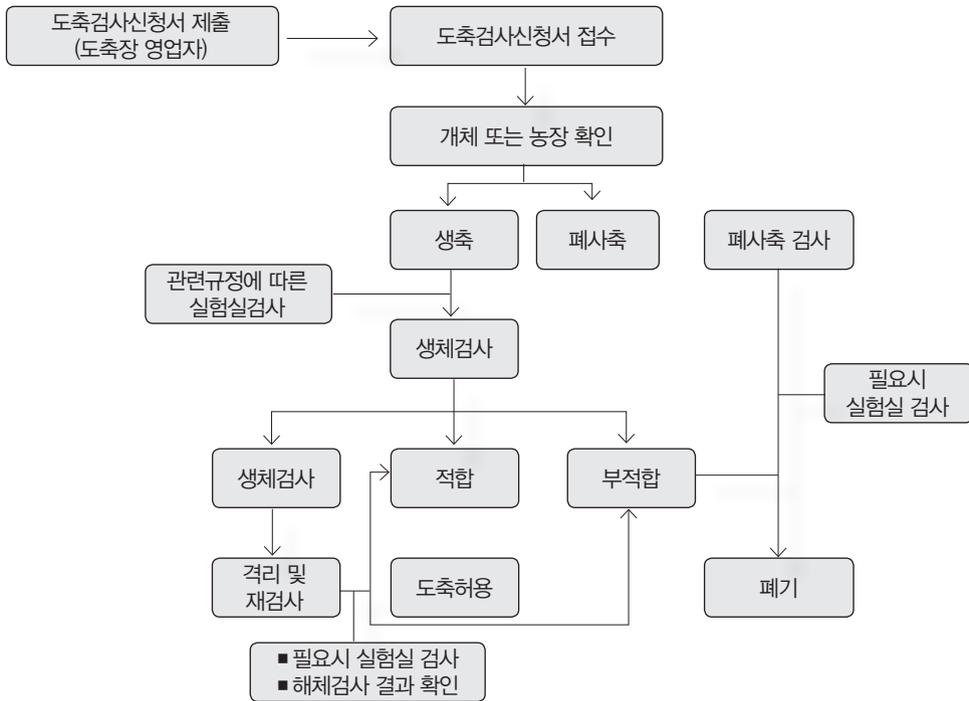
부칙 <제2016-18호, 2016.3.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은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

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망진 후 체온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에 안검, 비강 및 구강을 열어 검사하고 가축의 한쪽의 측면에 대하여 체표 림프절[별도1참고]을 포함하여 경부, 몸통 및 전지를 촉진하고 후방으로 향하여 항문,

생식기 및 후지를 검사하고 또한 다른 쪽의 측면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개체별 또는 돈군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생체검사 시에는 품종, 성별, 나이, 행동, 영양, 피부와 털 상태, 보행과 기립 상태, 비경 및 비강, 구강, 연하곤란, 안검과 결막, 비노생식기, 소화기 및 호흡기계 등 주요관찰 항목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라. 생체검사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축”으로 분류하여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가축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도축하여 그 식육은 해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
- (2)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처리

마. 죽은 가축, 죽어가는 가축, 움직이지 못하는 가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가축 제외),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축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눈 편평상피암과 같이 악성종양으로 인해 종양조직이 눈을 파괴하고 광범위하게 침습하여 화농 및 괴사가 수반하여

악취가 나거나 악액질을 수반하는 가축은 폐기하거나 도축을 금지한다.

사. 생체검사결과 탄저로 의심될 경우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밀검사시 탄저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축의 출하농가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탄저 환축이 있는 계류장 등은 철저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4. 가금류

가. 모든 가금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체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한다.

나. 군별검사는 군별(롯데) 단위로 실시하며, 가금의 자세, 거동상태, 쇠약상태, 털의 상태, 눈, 비공 및 항문 등 망진에 의해 농장별 전염병 등의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생체검사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군”으로 분류하여 도축을 허용한 경우 다른 가금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개체별 검사에서 머리 및 눈의 종창, 벼슬의 부종, 호흡곤란 및 재채기, 비정상 분변색깔, 피부병변, 사경, 뼈 및 관절 종대, 피부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죽은 가금, 죽어가는 가금, 움직이지 못하는 가금,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금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